

제 호

지 정 서

○ 성 명 (생년월일: . . .)

○ 주 소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참가 외국인이 소지하고 입국하는 총포·도검의 일시 수출입 및 소지 신청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
1. 지정기간: . . . ~ . . . (년간)

2. 총포·도검의 종류

년 월 일

시 · 도 경 찰 청 장 직인